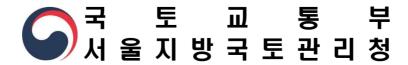
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
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
2020. 11.


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
- ○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본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을 실시하였음
- <u>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</u> 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함

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

제25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

-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6. 5. 29.>
-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 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6. 5. 29.>
- ④ <u>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

제43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)

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<u>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</u>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1. 29.>

1. 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○국지도56호선 수원산 구간은 굴곡이 연속된 산악지 도로로서 종단경사가 급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적설시마다 통행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도로임
- ○따라서, 금회 신설 및 시설개량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

1.2 추진경위 및 계획

○ 2016. 12. 제4차 국도·국지도 5개년('16~'20)계획(안) 예비타당성 조사

대상사업 선정

○ 2016. 12.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

○ 2017. 06. ~ 2017. 08. 관계기관(경기도, 국방부 등) 협의 및 회신

(※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계획의 재검토 필요)

○ 2017. 10.19 군내~내촌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

○ 2017. 12. ~ 2018. 04 군부대(국방부 등) 관계자 협의요청 및 회신

(※탄약고 이전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)

○ 2018. 04.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

○ 2018. 05.21 ~ 07.2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(서면심의) 및 결정

○ 2018. 08.02 ~ 08.15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(14일간)

(※서울지방국토관리청, 포천시,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)
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
○ 2018. 09.13 ~ 09.19 탄약고 이전 비용 관련 협조요청 및 회신(경기도)

(※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 예정)

○ 2018.12.06 ~ 2019. 01.07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·공고

○ 2019. 02.13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관계기관 검토의견 수렴

○ 2018. 12.20 주민설명회 개최

○ **2019**. 10.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

○ 2020. 01.1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(환경영향평가과-681)

○ 2020. 03.04 환경영향평가(초안) 제출 및 검토요청

(포천시, 경기도, 한강유역환경청)

○ 2020. 02. ~ 04.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(2020.03.20.~04.21)

(※코로나19 예방 위해 공람기간 연장 및 설명회 취소)

○ 2020. 04.06 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 회신(경기도)

○ 2020. 04.28 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 회신(한강유역환경청)

○ 2020. 05. ~ 06. 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·공고 재시행(2020.05.04.~06.02)

○ 2020. 05.13 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설명회 개최(군내면사무소)

○ 2020. 06.18 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 회신(포천시)(※주민의견 없음)

○ 2020. 08.20
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(한강유역환경청 등)
 ○ 2020. 10.30
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(환경평가과-12245)

1.3 계획의 내용

1.3.1 사 업 명 : 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

1.3.2 시간적 범위

○사업기간: 2020년~2024년(5년)

○목표연도(개통연도): 2044년(2025년)

1.3.3 공간적 범위

○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(538-4번지) ~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(53-2번지) 일원

1.3.4 사업시행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

1.3.5 승인기관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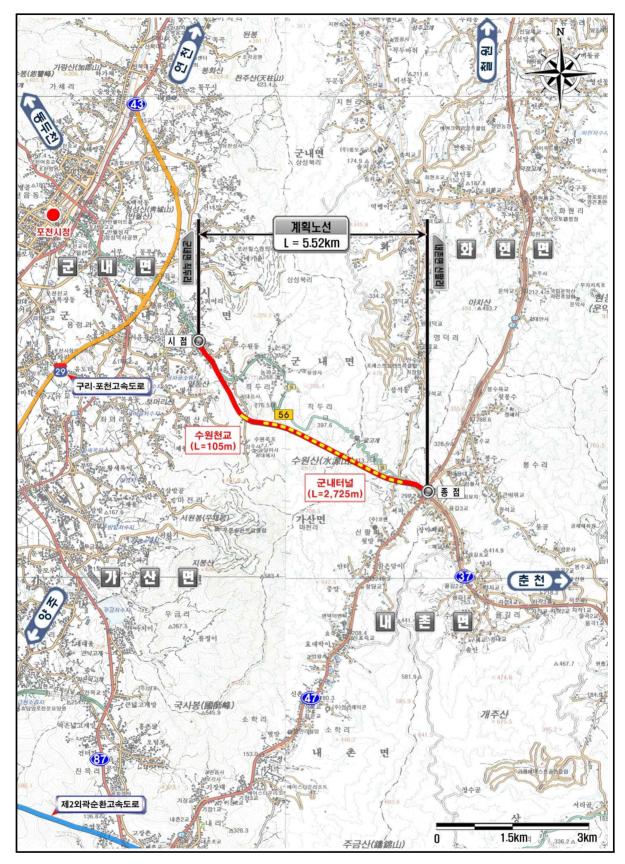
1.3.6 사업규모

○사업비 : 1,235억원(공사비 1,069억원, 보상비 98억원, 시설부대경비 68억원)

○사업규모 : L=5.52km, B=9.0~10.9m(※사업면적 : 130,392㎡)

구 분	연 장	폭 원	설계속도	주요구조물
군내~내촌	L=5.52km (신설 4.68km, 시설개량 0.84km)	B=9.0~10.9m (2차로)	60km/h	교량 1개소, 터널 1개소, 평면교차로 2개소

구분	표준횡단면도	도 로 기	테 원 (m)
		차로폭	2@3.25=6.5
토 공	10.0 1.5 3.25 0.5 3.25 1.5	중앙분리대	0.5
구 간	E P	길어깨	2@1.5=3.0
		총 폭원	10.0
	10.9 0.45 1.5 3.25 0.5 3.25 1.5 0.45	차로폭	2@3.25=6.5
		중앙분리대	0.5
량 구		길어깨	2@1.5=3.0
' 간		방호벽	2@0.45=0.9
		총 폭원	10.9
	9.0 1.0 3.25 0.5 3.25 1.0 Q	차로폭	2@3.25=6.5
터 널		중앙분리대	0.5
구 간		길어깨	2@1.0=2.0
		총 폭원	9.0



(그림 l-l) 군내~내촌 계획노선 위치도

사. 사업의 세부내용

1) 도로의 구분 : 국가지원지방도로(등급 :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)

2) 설계속도 : 60km/h

3) 기하구조

구		분	기 준	적 용	비고
설 계 속 도 (Km/h)			60	60	
최 소 평 면 (최 대 편	곡 선 반 경 사 6%	· ´	140	300	기존도로 준용구간
최 소 평	면	θ ≥ 5°	70	130	0 - 7 - 7
곡선길이(1	m)	Θ < 5°	350/⊖	-	θ:도로교각
최 대 종	단	평 지	5	-	() = 1 - 1 - 1
경 사 (%	%)	산 지	8	5.99	():소형차도로
최소종단곡선	凸 부	최 소	15	23	-
변화비율 (%)	비 부	최 소	15	23	-
최소종대	단 곡 선 점	<u>′</u>] ∘](m)	50	50	-
최 대	편 경	사(%)	6	5	-
최소	정지시거(n	n)	75	-	-
표 준 호	횡 단 경 서	·}(%)	2	2	-
편경사 생략 곡선반경(m)			1,700이상	-	-
최 소 완 화 곡 선(완화구간) 길이(m)			35	36	기존도로 준용구간
완화곡선 생략 가능 곡선반지름(m)			700	-	-
완 화 곡 /	선파라다	레 타(m)	$R/3 \le A \le R$	$R/3 \le A \le R$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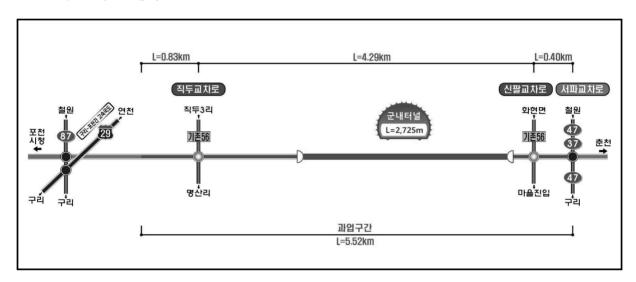
4) 교량 계획

교 량 명	위 치(STA.)	교량형식	연 장	비고
수원천교	1+664.500~1+769.665	P.S.C Beam	105.165m	수원천 횡단

5) 터널 계획

터 널 명	위 치(STA.)	연 장	비고
군내터널	2+115~4+840	2,725m	수원산 통과

6) 교차로 계획



	교차로명	위치(STA)	간격(km)	교차로형식	접속도로	비고
1	직두교차로	0+825	-	평면(4지)	기존국지도	비신호
2	신팔교차로	5+115	4.29	평면(4지)	기존국지도	비신호

1.4 사업의 기대효과

- ○신설 및 시설개량을 통한 동절기 적설시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 도모
- ○경기도 지역간 산업 물동량의 수송거리 축소, 물류비용 절감 등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2. 주민 등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

2.1 주민 및 관련 행정기관 의견 수렴개요

○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(주민 등의 의견수렴)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(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·공람 등), 제38조(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), 제39조(설명회의 개최)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

2.1.1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
1) 1차 공고·공람

가) 공고

- 포천시 공고 제2020-69호(2020년 03월 20일)
- ○중앙일간지: 한국일보(2020년 03월 20일)
- 지방일간지 : 일간경기(2020년 03월 20일)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

나) 공람기간 및 장소

- o 공람기간 : 2020년 03월 20일 ~ 04월 21일(21일간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- 0 공람장소
-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 포천시 도로과, 군내면사무소, 화현면사무소, 내촌면사무소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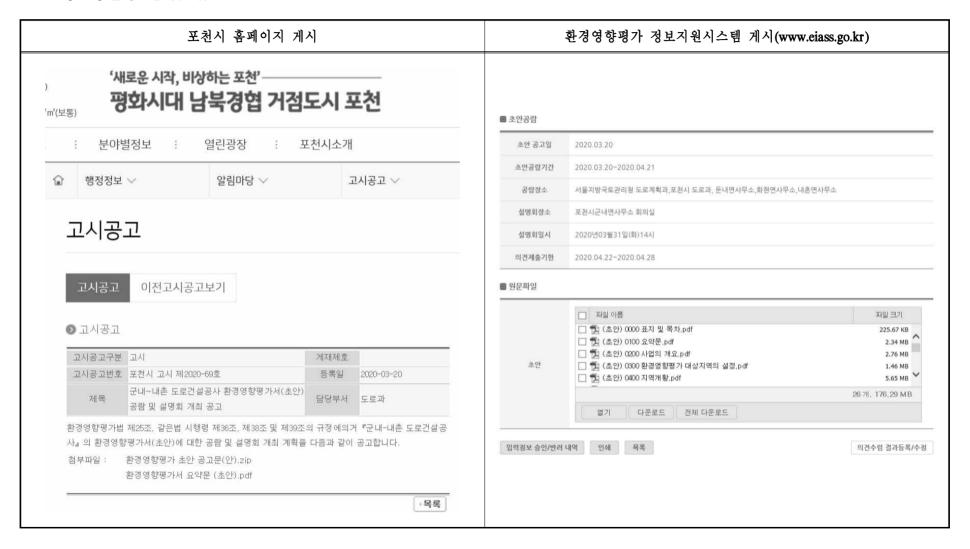
다) 공람내용

- ○포천시 홈페이지 : 공고문,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문
- ○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: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전문
- 공람장소 :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비치

라)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

- ○제출기간 :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
- ○제출방법: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
- ○제출장소 : 포천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,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

▶ 정보통신망 게시(l차)



▶ 신문공고(l차)

2020년 3월 20일 금요일

WWW.HANKOOKILBO.COM

한국일보

포천시 공고 제2020-69호

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
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「군내ー내촌 도로건설공사」의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략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0일

포천시장

1. 사업 개요

o 사 업 명 : 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

o 위 치: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~ 내촌면 신팔리 일원

ㅇ 노 선 : 국지도56호선(L=5.52km)

O 시 행 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ㅇ 공람기간 : 2020, 03, 20, ~ 2020, 04, 21,(21일)

o 공람장소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 포천시 건설과,

군내면사무소,화현면사무소, 내촌면사무소

o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: 환경영향평가서 초안(공람장소 비치)

3.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o 포천시 군내면사무소 회의실: 2020, 03, 31 (화) 14:00

4. 주민의견 제출

o 제출기간: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

o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거 제출

o 제 출 처 : 포천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, 포천시청 친환경환경과

- 5.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공고문은 포천시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.go,kr)에 게시하였으며,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시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(※ 02-2110-6807), 포천시 도로과 도로시설팀(※ 031-538-33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20일 금요일

일간경기

포천시 공고 제2020-69호

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
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「군내―내촌 도로건설공사」의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0일

포 천 시 장

1. 사업 개요

o 사 업 명 : 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

o 위 치: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~ 내촌면 신팔리 일원

o 노 선: 국지도56호선(L=5.52km)

이 시 행자: 서울지방국토관리청

2, 공람기간 및 장소

o 공람기간: 2020 03 20 ~ 2020 04 21(21일)

o 공람장소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포천시 건설과 군내면사무소화현면사무소, 내촌면사무소

o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: 환경영향평가서 초안(공람장소 비치)

3.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o 포천시 군내면사무소 회의실: 2020, 03.31(화) 14:00

4. 주민의견 제출

o 제출기간: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

o 제출방법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거 제출

O 제 출 처 : 포천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, 포천시청 친환경환경과

5.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공고문은 포천시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.go.kr)에 게시 하였으며, 공감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장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지않고 본공고에 길음됨을 일려드립니다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(★ 02-2110-6807), 포천시 도로과 도로사설팀(★ 031-538-33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) 주민설명회 잠정 연기 공고

- ○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 중 코로나19(COVID-19)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포천시에서 당초 2020년 3월 31일(화) 개최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의 일정을 잠정 연기를 요청함
- ○따라서, 관계기관 행정 정보통신망(포천시공고 제2020-710호),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주민설명회 일정을 잠정 연기함을 공고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당일 주민설명회장소(군내면사무소)에서 주민설명회 연기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함

포천시 홈페이지 공고(주민설명회 연기)

▶ 고시공고

고시공고구분	공고(일반공고)	게재제호	
고시공고번호	포천시 공고 제2020-710호	등록일	2020-03-30
제목	군내~내촌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회 개최 연기 공고	담당부서	도로과

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의거 『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』의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공고(포천시 공고 제2020-69호, 2020.03,20.) 하였으나, 최근 코로나19(COVID-19)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잠정 연기함을 공고합니다.

첨부파일: 환경영향평가 초안 (연기)공고문(군내-내촌).hwp
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환경영향평가 🗸

상세정보 검토사	작성자정보 협의진헽현활 초안공람 결	정내용공개 주민의견	수렴 원문정보
초안 공고일	2020.03.20	초안공람기간	2020.03.20 ~ 2020.04.21
공람장소	서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포천시 도로과,	둔내면사무소,화현면사무:	소,내촌면사무소
설명회장소	포천시군내면사무소 회의실		
설명회일시	감정연기(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연기조치)	의견제출기간	2020.04.22 ~ 2020.04.28
연락처(부서명,전 화번호)		메일	

3) 2차 공람·공고

○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기 공고하였으나, 코로나19(COVID-19)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예방기간(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)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하여 재조정(연기) 하여 추가 공고를 실시함

가) 재공고

- 포천시 공고 제2020-968호(2020년 05월 04일)
- 중앙일간지 : 전국매일일보(2020년 05월 04일)
- ○지방일간지: 신아일보(2020년 05월 04일)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

나)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(변경) : 2020년 05월 04일 ~ 06월 02일(21일간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- 공람장소(변경 없음)
-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 포천시 도로과, 군내면사무소, 화현면사무소, 내촌면사무소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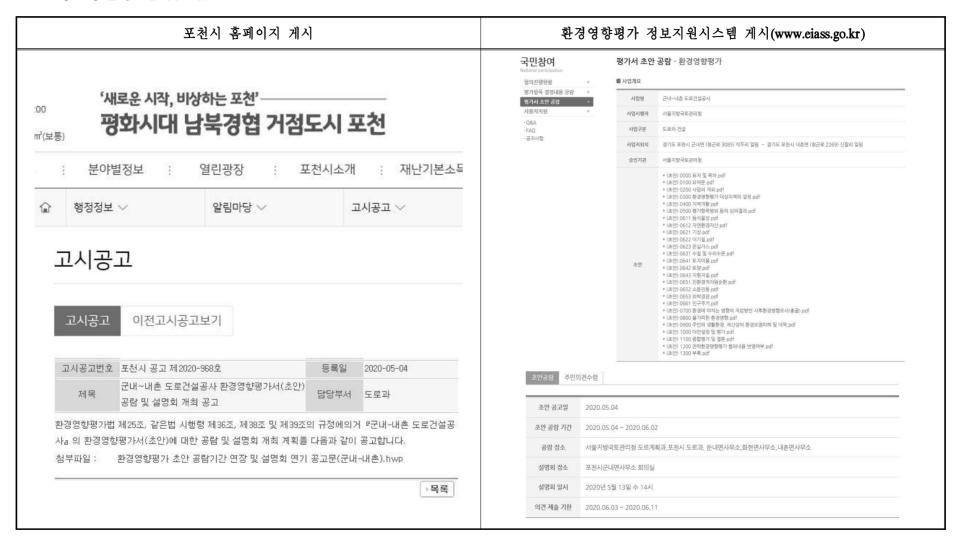
다) 공람내용

- ○포천시 홈페이지(변경 없음): 공고문,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문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변경 없음):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전문
- 공람장소(변경 없음):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비치

라)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

- ○제출기간(변경):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
- ○제출방법(변경 없음):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
- ○제출장소(변경 없음): 포천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,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

▶ 정보통신망 게시(2차)



▶ 신문공고(2차)

중앙일간지(전국매일신문) 지방일간지(신아일보) 포천시 공고 제2020-968호 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기간 및 설명회 개최 일정 재조정 공고 공람기간 및 설명회 개최 일정 재조정 공고 . 『환경영향평가법』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[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]의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「군내ー내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기 공고하고 코로나19(COVID-19)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에 대한 추가 공고도 실시 촌 도로건설공사」의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기 공고하 하였으나, 최근 예방기간(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)이 연장됨에 따라 고 코로나19(COVID-19)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연기에 대한 추가 공고도 실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하여 재조정(연기) 하여 공고합 시하였으나, 최근 예방기간(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)이 연장됨에 따라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 2020년 5월 4일 회 개최 일정에 대하여 재조정(연기) 하여 공고합니다 푸 천 시 장 2020년 5월 4일 1. 사업 개요 (변경 없음) · 사 업 명 : 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 포천시장 • 위 치 :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~ 내촌면 신팔리 일원 1. 사업 개요 (변경 없음) · 노 선 : 국지도56호선(L=5.52km) · 시 행 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 사 업명: 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 ㅇ 위 치: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~ 내촌면 신팔리 일원 2. 공람기간 조정 (연장) ㅇ 노 선: 국지도56호선(L=5.52km) · 공람기간(변경) : 당초) 2020. 03. 20 ~ 2020. 04. 21(21일) 이 시 행 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변경) 2020. 05. 04 ~ 2020. 06. 02(21일) · 공람장소(변경 없음)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 2. 공람기간 조정 (연장) 포천시 도로과,군내면사무소, 화현면사무소, 내촌면사무소 ○ 공람기간(**변경)**: 당초) 2020. 03. 20. ~ 2020. 04. 21.(21일) ·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: 환경영향평가서 초안(공람장소 비치) 변경) 2020. 05, 04, ~ 2020 06, 02,(21일) ㅇ 공람장소(변경 없음)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 포천시 도로과, 3. 주민설명회 재개최 일정 조정(연기) · 당초 : 포천시 군내면사무소 회의실 : 2020. 03. 31(화) 14:00 군내면사무소, 화현면사무소, 내촌면사무소 · 변경 : 포천시 군내면사무소 회의실 : 2020. 05. 13(수) 14:00 ㅇ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: 환경영향평가서 초아(공람장소 비치) 3. 주민설명회 재개최 일정 조정(연기) ○ 당초 : 포천시 군내면사무소 회의실 : 2020 03.31(화) 14:00 ㆍ 제출기간 :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(6월 11일까지) ㆍ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거 제출 o 변경: 포천시 군내면사무소 회의실: 2020 05 13.(수) 14:00 · 제 출 처 : 포천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,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 이 제출기간 :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까지(6월 11일까지) 이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거 제출 5. 기타사항 ·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공고문은 포천시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lass.go.kr)에 게시하였으며, 공람 및 주민설명회 O 제 출 처 : 포천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, 포처시청 친환경정책과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 및 신문공고에 ○ 환경영항평가서 초안 및 공고문은 포천시청 홍페이지. 환경영항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lass.go.kr)에 게시 하였으며, 고라 및 주민석면의 제공로 하였으며,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 및 신문공고에 의해 갈음 의해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. ·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(☎ 02-2110-6807), 포천시 도로과 도로시설팀(☎ 031-538-3374)으로 문의하시기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(◎ 02~2110~6807) 포천시 도로과 도로시설팀(◎ 021 도요? 22710 로 모이오나요? HI랍니다. 031-538-33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나. 주민설명회 개최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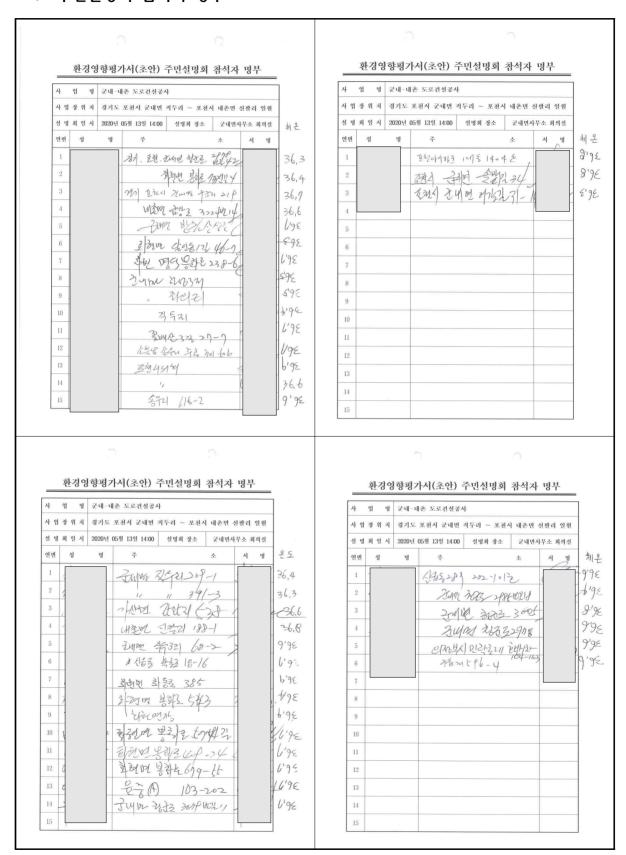
ㅇ주민설명회 개최 개요

구 분	내 용	비고
일 시	○ 2020년 5월 13일(수) 14시	-
장 소	○군내면사무소	-
참 석 자	○채00 외 38명	참석자명부 참조
설 명 회 내 용	○주민설명회 개회 ○계획노선 설명 ○환경영향평가(초안) 내용 설명 ○주민 질의 및 답변	-

ㅇ주민설명회 개최 사진



▶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

다. 관련 행정기관 의견수렴

○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(초안)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였음

소 속	관 련 부 서	비고
한강유역환경청	환경평가과	협의기관의 장
경 기 도	환경정책과	대상지역 관할 도지사
포천시청	도로계획과, 친환경정책과	사업지역 주관 시장

▶ 한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

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견

I . 사업개요

- O 위 치 :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~ 내촌면 신팔리 일원
- O 사업내용 : 728,096㎡, 연장 5.52km(신설 4.68km, 개량 0.84km)
- 폭원 9~10.9m 왕복2차로, 설계속도 60km/hr
- 터널 1개소(2,725m), 교량 1개소(105m), 교차로 2개소
- 승인기관(사업시행자)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(서울지방국토관리청)
- O 협의근거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
 - 「도로법」제2조제1호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2 조제13호에 따른 4킬로미터 이상 도로의 건설사업
- O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

Ⅱ. 협의의견

1. 총 괄

- 본 사업계획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서 내촌면 신팔리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함
- 공사 및 운영 시 계획노선과 연접한 정온시설(주거시설 등)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
 - 토공량, 장비투입대수 및 토공기간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, 대기질 확산영향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

- 1 -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- 더널페수 처리계획 및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
- 권고수절: pH 8.5이하, BOD 10mg/L이하, SS 20mg/L이하, TOC 15mg/L이하, TN 20mg/L이하, TP 1mg/L이하 등
- O 터널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·유입량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운영 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재이용계획을 수립
- 군내터널 종점부의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구간 연장, 관리사무소 및 회전교차로의 입지변경 등을 검토하고, 불가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- 절도사면의 비탈면보강 및 비탈면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, 비탈면붕괴 감지센서 설치 등 이차적인 환경꾀해방지 대책도 추가로 검토·제시하여야 함

2. 항목별 검토의견

가. 동·식물상

- 계획노선이 횡단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각각의 생물군별 영향,
 주요종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및 수환경 보전방안을 수계별,
 구간별로 제시하여야 함
- 공사 시 토사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생태계를 보전 할 수 있도록 수질항목과 연계하여 적정 위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저감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
- 각 생물군의 영향여부, 주요 종 및 서식지 영향정도, 수환경 보진방안에 대하여 각 하천병, 구간별로 제시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- 공사 및 운영 시 하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하천별,
 구간별로 저감방안을 제시
- 가배수로,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은 공사 시 변경되는 배수유역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, 위치 및 개수 산정·제시
- 훼손수목의 수형, 흥고직경, 지형, 토양환경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훼손수목을 최대한 이식 또는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· 제시하여야 함
- 이식·가이식장 위치, 관리계획(이식수종, 수 등) 및 외부반출을 계획할 경우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을 제시
- ※ 이식수목량 재산정 시 총 훼손수목량의 10% 이상을 이식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
-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, 비상보전대책의 경우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36조 및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공사 중 생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
- ※「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」(KEI, 2010, 42-46쪽 참조)

나. 대기환경 분야(기상, 대기질)

1) 기상

- 사업노선 서측의 자동기상관측망(포천) 자료(1년간)를 이용하여 기상현황(종학별 품속등급 분포도(바람장미도))을 제시하고, 동두천 기상대 자료와 비교·분석 후 품계가 상이할 경우, 기상관측망 (포천)의 관측항목을 동두천기상대 자료와 통합하여 대기모델링 기상인력자료로 점용·예측하여야 한
- 기상입력자료(자동기상관측당(포천)과 동두천기상대 관측항목 통합) 일부(1월 1주)를 부록에 제시

- 3 -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2) 대기질

- 공사 시 영향예측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·제시하여야 함
- 작업 중단일수 및 공사구간을 고려하여 실제 토공기간을 산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일 토공량 및 장비투입대수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작업구간별(터널 노상부 등)로 구분·산정하여 대기질 황산영향을 예종·제시하여야 한
- O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공사시기, 계획지구 주변 주거·교육시설 등 정온시설의 위치를 고려한 집중살수, 세륜·세차시설 운영 및 이동식 방진망 설치 등
- 토사적치장 및 절·성토사면에 방진망, 천막덮개 등을 설치하여 비산던지 발생 예방
- 세륜·세차, 살수시설 미 운영 시(겨울철 통과 통)에 대한 비산 먼지 관리방안 수립
-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적된 먼지가 재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방안 수리
-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(미세먼지 예보자료 활용) 시 추가 저감 대책 이행 등의 대응방안 마련
- 더널설치에 따라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터널운영 시 도로폭과 연장, 교통량(AERMOD)*과 통행차량(분류-등가배출강도모델 & AERMOD)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정온시설별로 현황 농도와 합산한 예측농도를 제시하여야 함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- PM10 및 PM2.5는 일평균 교통량으로 24시간 평균 및 연간환경기준을, O2는 첨두시 교통량으로 1시간 기준을 적용·평가
- 환경기준농도 대비 가중농도 기여율(%)을 산정하여 제시
- 운영 시 도로 재비산먼지, 타이어·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을 고려 하여 배출량 산정 및 영향 예측
- ※「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」, 2012,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참조
- 터널 입·출구 인근 영향예상 대상시설(주거시설,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) 분포현황 제시(이격거리, 지형적 차폐 등)
- 운영 시 환기계획(Jet Fan 설치 및 운영) 및 저감대책을 수립
- 공사기간 중 B/P, C/R 설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·제 시하여야 함
-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영 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계획노선 주변 식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계획노선 주변과 지형적으로 차폐되지 않는 주거·교육시설 등 정운시설 인접구간, 터널 입·출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
-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함
- 운영 시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(조사주기 1일 조사에서 3일 조사로 변경)
- 운영 시 터널 시점·종점 인접지점에 사후조사지점을 선정

- 5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다. 수환경 분야

1) 수질(지표)

- 수원천을 횡단하는 교량 공사 시 부유토사 발생량, 하천의 부유토사 농도 등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정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
 - 가물막이, 가도·축도 등 수환경에 영향이 큰 공사 시 공사구간의 상·하류와 인접한 지점(20~30m 이내)을 수절조사지점으로 선정 하여 부유토사(SS) 농도에 대한 수절 모니터링을 실시
- 교량공사 시 상류의 부유토사(SS) 농도와 비교하여 하류의 유지 목표수질 농도를 제시하고 월1회이상 측정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
- O 터널페수 처리계획 및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
- 계획노선 하류수계의 하천수질이 BOD, SS 각각 Ia등급 매우 좋은 상태로 공사 시 하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터널페수의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
- · 권고수절: pH 8.5이하, BOD 10mg/L이하, SS 20mg/L이하, TOC 15mg/L이하, TN 20mg/L이하, TP 1mg/L이하 등
- 터널페수 처리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집수조, 옹집조, 중화 조정조 등의 공정별 시설용량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제시
- 터널폐수 처리수의 일시적인 방류로 인해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폐수 처리시설과 인접한 지점에 임시침사지를 설치하고, 처리수를 침사지로 유도한 후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
- 운영 시 터널 세척수 및 오수처리수 방류수 목표수질을 제시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2) 수질(지하수)

- 지하수 유출(유입)량 및 지하수위 강하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·제시하여야 항
- 지하수 영향예측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점을 선정 및 지하수위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
- 터널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하수 유입량·유출량에 대한 조사·기록
- 터널 공사 시 지하수 유출량을 조사·기록(공사 시 일 1회 이상)하고 유출이 상당한 구간에 대해 지반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질구조(절리 방향 및 분포 등)를 조사·기록
- 운영 시 터널 유출지하수 발생량에 대한 재이용을 검토하고 배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야 함
- 운영 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배수·차집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을 제시
- 유출지하수 재이용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주기적인 측정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
- 동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출부하량 할당·협의를 진행할 계획인바,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관할지역 시행청(표천시)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랑을 할당받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
- 금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개발부하당을 활당받지 아니하고,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점에 해당 시행청(포천시) 및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찬여 지역개발 부하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시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진행될 수 없음

- 7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- 아울리, 동 사업은 수절오염총량 1단제(13년~20년) 기간 외 지역 개발사업(준공예정년도: 2024년)에 해당하므로, 「오염총량관리기 분방점(환정부훈령 제1440초, 2019.12.27)」제28조제2항에 따라 삭 간계획을 수립하여 수절오염총량 적정성 검토 후 관련 행정절 차(환정열항평가 등)를 이행하여야 함

라. 토지환경 분야

가) 토지이용

○ 군내터널의 종점부 인근에 38m의 대규모 절토가 계획되어 있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훼손이 과도하므로 터널을 STA.5+100 지점까지 연장하고, 관리사무소와 회전교차로의 입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
나) 지형·지질

- O 20m 이상의 사면고가 발생하는 구간은 절·성토계획 및 종단· 평면선형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절토사면은 비탈면보강, 비탈면처리대책, 비탈면붕괴 감지센서 설치 및 운영 시 관리대책 등을 수립·제시
- O 고성토(18m이상) 구간은 교량을 연장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· 제시하여야 항

마. 생활환경분야

가) 친환경적 자원순환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-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(재활용 포함)의 처리가능 허용 용량(용량, 설적 등), 「자원순환기본계획」, 「폐기물처리기본 계획」,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등을 참고하여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(소자, 매립 및 재활용 등) 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·제시하여야 함
- 지장물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장물 천거 시 유해물질(석면, 수은, 변압기 내의 PCB, 태양광패널 등) 발생량을 산정하고, 적정 관 리계획(폐기물 유행발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과 인근 지역의 인목폐기물 처리 업체(벌제, 제재, 재활용, 임목폐기물처리업제 등) 현황을 고려하여 임목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재활용이 가능한 수종, 재활용 용도, 재활용 대상(뿌리, 가지, 잎, 줄기), 재활용 수량(무개) 등 제시

나) 소음·진동

- 공정별(토공사, 교량기초공사, 발파 등)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합성소음도를 기준으로 영향을 예측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저감대해(가설방음관텔 등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 - 공사 시 합성소음도 예측결과 목표기준을 초과한 지점을 사후 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·선정
- 계획노선 운영에 따른 도로소음 영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예측하고,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
- 목표 연도까지 연도뱀/시간대(24시간)별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소음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한 평가 (교통 관련 전문가의 이력 사항 포함)
- 환경기준을 초과한 정온시설과 계획노선과의 이격거리를 제시

- 9 -

[사업변호: HG2020E001]

다) 위라·경과

- O 계획노선 중 고성토 구간 주변에 마을이 위치할 경우 차폐 및 마을측에서 조망되는 경관영향을 현실감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예측하고,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 여야 함
- 군내터널의 종점부와 관리사무소 설치 등으로 인해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지점은 토지이용 항목의 검토의견을 반영(터널 연장) 하여 신팔리 마을에서 조망되는 개발 전·후의 경관변화를 예 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

바. 기타 의견

- 사업면적, 시접·종점 주소 및 횡단면도를 제시하여야 함
- ○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·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
- O 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초안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 럽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(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)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
- 본 초안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
- 각 항목별 예측·평가에 따른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
- O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작성· 제시하여야 함

[사업번호: HG2020E001]

- 특히,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·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(예측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)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
-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의 공사·운영 시 평가항목별 조사항목, 조사지역 및 지점, 조사주기, 조사방법 등을 총괄 도표 및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함
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,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. 끝.

- 11 -

▶ 경기도 검토의견

새로운 경기, 공정한 세상

71 F



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(도로계획과장)

제목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회신(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)

경

1,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-1926(2020.3.4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국지도 56호선 '군내-내촌 도로건설공사' 관련 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하여 붙임과 같 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.

붙임 검토의견서 1부, 끝,



자연생태팀장 홍석인 협조자

시행 환경정책과-5570

접수 도로계획과-2845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필달구 효원로 1,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(매산로 / http://www.gg.go.kr/

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

전화번호 031-8008-3514 팩스번호 031-8008-3539 / nane@gg.go.kr

화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

□ 사업개요

○ 계 획 명 : 군내~내촌 도로건설공사

○ 위 치: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~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일원

모 : 총 5.52km ※ 신설 4.68km, 시설개량 0.84k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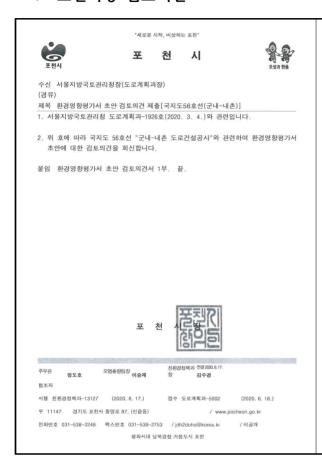
○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 ○ 시 행 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

○ 승인기관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

□ 검토의견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터널페수처리기준 강화(가지역→청정지역), 수직자동측정기기(TMS) 설치를 반영하영을 평가서상의 계획에 따라 수화경 보전을 위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, 예측하지 못한 부분 으로 인해 하류수계에 영향을 미칠 시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 · 이행하시기 바람
-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여부를 각각 제시해야 함
- 현지조사 시, 법정보호종으로 삵, 황조롱이, 독수리가 발견되었으므로 모니 터링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, 보호종 발견 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지문을 받아 개체군이 소멸되지 않도록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, 경기도보호종에 대한 조사 필요
-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보호시설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, 합리적인 협의 등을 거쳐 민원 해결 방안 강구
- 건설페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인 '골재 소요량의 40%'를 준수하여야 함
- 동물 이동로 확보 및 로드킬 방지 등 생태계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유도 울타리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「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참조하여 조성 목적에 부한된 수 인도록 석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
- 운영 시 소음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방음벽 설치의 경우 불투명벽, 조류 충돌테이프 부착 등 조류 충돌 방지를 고려하여 설치하시기 바람

▶ 포천시청 검토의견



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서

(친환경정책과)

건 명	「군내~내촌 도로건설공사」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위 치	군내면 직두리 ~ 내촌면 신팔리 일원
사업개요	- 연장 5,52km(신설 4.68km, 시설개량 0.84km)
부 서 명	검 토 의 견
친환경정책과	 한 장수계 상수원수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전 원환경정책과에 수권오염총량 검토서를 작성세출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활당받아야 함. ○ 자연환정보원법(생태계보원협력급)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, 전략 또는 소규모 환경영황평기 대상사업으로 사업면적이 3만m 이상일 경우에는 「자연환경보원법」 채46조의 따른 생태계보원협력금 무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인기관(부서)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채35조에 따른 병자체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 보권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.(문의 031~8008~3514)

2.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

2.2.1 주민의견수렴

○주민의견은 별도의 서면제출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, 설명회 당시 질의사항을 제시함

구 분	질 의 사 항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직두리 주민 5 인	○사전에 지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, 그 결과와 정확히 결정된 노선 위치를 요구함		추후 반영
	○도로노선에 의해 토지가 분할되면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	○ 토지의 고립여부, 인접토지의 소유여부, 농기계 진입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주민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보상계획을 수립·제시하겠음	추후 반영
	○공사로 인해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예상 되는데, 세부적인 피해보상계획에 대한 답 변을 요구		반영
	○기존 노선변경으로 인한 상권변화 영향에 대한 답변 요구	○기존도로의 변경은 없도록 계획하고 신설구간이 대부분이며, 기존도로 개 량공사구간은 국도 4등급 기준을 유 지하기 위해 폭원이 일부 증가하여 지장물 편입이 예상되나, 상권에 대 한 영향은 없도록 계획하였음	반영
	○ 공사시 흙탕물에 의한 농업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대책방안을 요구	○침사지, 터널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 하여 적정 처리 후 방류할 계획이며, 공사시 주기적인 측정 및 모니터링 을 실시토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에 반영하였으며, 모니터링결과 영향 예상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	반영

2.2.2 관련 행정기관 의견수렴

가. 한강유역환경청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총 괄	○본 사업계획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 리에서 내촌면 신팔리 일원을 연결하는 도 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	가 초안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	반 영
	성 시 반영하여야 함 O 공사 및 운영 시 계획노선과 연접한 정온 시설(주거시설 등)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- 토공량, 장비투입대수 및 토공기간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, 대기질 확산영향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	영향을 예측하였으며, 적절한 저감 대책을 제시하였음 - 토공량, 장비투입대수 및 토공기간 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여 대기질 확산영향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	반 영
	○ 터널폐수 처리계획 및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- 권고수질: pH 8.5이하, BOD 10mg/L이하, SS 20mg/L이하, TOC 15mg/L이하, TN 20 mg/L이하, TP 1mg/L이하 등	금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pH 8.5이하, BOD 10mg/L이하, SS 20mg/L이하, TOC 15mg/L이하, TN 20mg/L이하, TP	반 영
	○ 터널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·유입량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운영 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재이용계획을 수립	○ 터널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·유입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고「지하수법 시행령」제14조의2(유출지하수의 용도)에 의거 유출지하수에 대한 재이용(소방용수, 청소용수, 조경용수등)토록 계획을 수립·제시하였음	반 영
	○군내터널 종점부의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구간 연장, 관리사무소 및 회전교차로의 입지변경 등을 검토하고, 불 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 거를 제시하여야 함	교차로의 입지변경 등을 검토한 결 과, 이설도로 신설필요, 군부대 인접	반 영
	○절토사면의 비탈면보강 및 비탈면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비탈면붕괴 감지 센서 설치 등 이차적인 환경피해방지 대책 도 추가로 검토·제시하여야 함		반 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동·식 물상	○계획노선이 횡단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각 각의 생물군별 영향, 주요종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및 수환경 보전방안을 수계 별, 구간별로 제시하여야 함	천 및 수원천 2개소로 조사되었으며,	반 영
	○ 공사 시 토사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 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수질 항목과 연계하여 적정 위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저감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 획하여야 함	차단하기 위해 적정 위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저감시설물 설치계획을	반 영
	- 각 생물군의 영향여부, 주요 종 및 서식 지 영향정도, 수환경 보전방안에 대하여 각 하천별, 구간별로 제시		반 영
	- 가배수로,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 시설은 공사 시 변경되는 배수유역을 검토 하여 적정 규모, 위치 및 개수 산정·제시	지막(수원천) 등 공사시 배수유역을	반영
	○훼손수목의 수형, 흉고직경, 지형, 토양환경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훼손수목을 최대한 이식 또는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함 - 이식·가이식장 위치, 관리계획(이식수종, 수등) 및 외부반출을 계획할 경우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을 제시 ※이식수목량 재산정 시 총 훼손수목량의 10% 이상을 이식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	이식계획을 수립·제시하였으며, 이식· 가이식장 위치, 이식수종 및 수량 등을 제시하였음 - 가이식장: 군내터널 전·후 2개소 - 이식수종 및 수량 :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 지역임을 고려하여 소나무류를 제외한 자생	반 영
	○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 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, 비상보전대책의 경 우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36조 및 다음의 보 고서를 참조하여 공사 중 생태계훼손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※「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 축」(KEI, 2010, 42-46쪽 참조)	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"개발사업 생태계 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, KEI, 2010"을 참고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수립·제시하였음 - 사고발생등급별 현장대응체계 구축	반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대기	1) 기상		
환경 분야 (기상, 대기질)	·	제시하였으며, 동두천 기상대와 풍계를 비교해본 결과,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- 따라서, 자동기상관측망(포천) 자료와 동두천기상대 자료 모두 대기모델링 기상입력자료로 적용하였으며, 부록에기상입력 자료를 제시하였음	반 영
	2) 대기질 ○공사 시 영향예측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·제시하여야 함 - 작업 중단일수 및 공사구간을 고려하여 실제 토공기간을 산출하고, 그 결과를 토 대로 일 토공량 및 장비투입대수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작업구간별(터널 노상 부 등)로 구분·산정하여 대기질 확산영향 을 예측·제시하여야 함	한 실질적인 공사기간(토공부 1,001 일, 군내터널 939일)을 산출하였으며,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예측하였음 - 계획노선 노상부 구간 / 군내터널 구간	반 영
	○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공사시기, 계획지구 주변 주거·교육시설 등 정온시설의 위치를 고려한 집중살수, 세륜·세차시설 운영 및 이동식 방진망 설치 등 - 토사적치장 및 절·성토사면에 방진망, 천막 덮개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예방 - 세륜·세차, 살수시설 미 운영 시(겨울철 동파 등)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방안 수립 -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적된 먼지가 재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방안 수립 -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(미세먼지 예보자료 활용) 시 추가 저감대책 이행 등의 대응 방안 마련	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, 추가적 인 저감 대책을 수립 제시하였음 - 살수, 세륜·세차시설, 이동식 방진망, 방진망 덮개 등 -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, 비상저감조 치 발령요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·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· 공사장내 살수 강화 · 공사장내 속도제한 강화	반 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대기 환경 분야 (기상, 대기질)	○ 터널설치에 따라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터널운영 시 도로폭과 연장, 교통량 (AERMOD)*과 통행차량(분류·등가배출 강도모델 & AERMOD)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정온시설별로 현황농도와 합산한 예측농도를 제시하여야 함 * PM10 및 PM2.5는 일평균 교통량으로 24시간 평균 및 연간환경기준을, O2는 참두시 교통량으로 1시간 기준을 적용·평가- 환경기준농도 대비 가중농도 기여율(%)을 산정하여 제시 - 운영 시 도로 재비산먼지, 타이어·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 산정 및 영향 예측 ※ 「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」, 2012,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참조-터널 입·출구 인근 영향예상 대상시설(주거시설,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) 분포현황제시(이격거리, 지형적 차폐 등) - 운영 시 환기계획(Jet Fan 설치 및 운영) 및 저감대책을 수립	생량을 예측하기 위해 AERMOD 및 분류·등가배출 강도모델를 활용하여 예측을 실시하였음 - PM-10. PM-2.5는 일평균 교통량으로 24hr기준 및 연간기준, CO ₂ 는 첨두시 교통량으로 1시간 기준을 적용하였음 - 운영시 도로 재비산먼지, 타이어·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- 군내터널 입·출구 인근 대상시설(8. 직두3리마을① 등 4개지역) 분포현황을 제시하였으며, 운영시 터널환기계획으로 Jet Fan설치·운영을 계획하였음	반 영
	○공사기간 중 B/P, C/R 설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로, 별도의 발생량 및 영향예측을 진행하지 않았음	
	○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영 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계획노선 주변 식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계획노선 주변과 지형적으로 차폐되지 않 는 주거·교육시설 등 정온시설 인접구간, 터널 입·출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	○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최소화를 위해 계획노선 주변	반 영
	○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함 - 운영 시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(조사주기 1일 조사에서 3일 조사로 변경) - 운영 시 터널 시점·종점 인접지점에 사후조사지점을 선정	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하였으며, 3일조사로 변경하였음	반 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수 환경 분야 (지표)	1) 수질(지표) ○수원천을 횡단하는 교량 공사 시 부유토사 발생량, 하천의 부유토사 농도 등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정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- 가물막이, 가도·축도 등 수환경에 영향이 큰 공사 시 공사구간의 상·하류와 인접한지점(20∼30m 이내)을 수질조사지점으로선정하여 부유토사(SS) 농도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 - 교량공사 시 상류의 부유토사(SS) 농도와비교하여 하류의 유지목표수질 농도를 제시하고 월 1회이상 측정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	수체내 접촉교각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, 수원천교 교량 공사에 따른 하류수계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오탁 방지막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였음 - 수원천교 교량공사시 상·하류 30m이내지점을 사후환경영향조사시수질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부유 도사(SS) 농도에 대한 수질 모니터 링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임	반 영
	○터널폐수 처리계획 및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 - 계획노선 하류수계의 하천수질이 BOD, SS 각각 Ia등급 매우좋은 상태로 공사시 하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터널폐수의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 · 권고수질: pH 8.5이하, BOD 10mg/L이하, SS 20mg/L이하, TOC 15mg/L이하, TN 20mg/L이하, TP 1mg/L이하 등 - 터널폐수 처리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집수조, 응집조, 중화조정조 등의 공정별 시설용량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·제시 - 터널폐수 처리수의 일시적인 방류로 인해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폐수 처리시설과 인접한 지점에 임시침사지를 설치하고, 처리수를 침사지로 유도한 후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 - 운영 시 터널 세척수 및 오수처리수 방류수 목표수질을 제시	용기준을 강화하여 제시하였음 - pH 8.5이하, BOD 10mg/L이하, SS 20mg/L이하, TOC 15mg/L이하, TN 20mg/L이하, TP 1mg/L이하 ○ 터널페수 처리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처리시설의 공정도 및 세부제원을 제시하였음 - 개소수: 터널 시·종점부 2개소 - 용량: 시점 900㎡/일, 종점 700㎡/일 ○ 터널페수 처리수의 일시적인 방류로인해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페수 처리시설 인접 지점에 침사지를 계획하였으며, 처리수를 침사지로 유도한 후방류토록할계획임 ○ 운영시 터널세척수는 별도의 세정수처리조를 설치하여 집수할계획이며, 집수된 세정수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함	반 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수 환경 분야 (지표)	2) 수질(지하수) ○지하수 유출(유입)량 및 지하수위 강하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- 지하수 영향예측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점을 선정 및 지하수위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- 터널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하수 유입량·유출량에 대한 조사·기록 - 터널 공사 시 지하수 유출량을 조사·기록(공사 시 일 1회 이상)하고 유출이 상당한 구간에 대해 지반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질구조(절리 방향 및 분포 등)를조사·기록	하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○운영 시 터널 유출지하수 발생량에 대한 재이용을 검토하고 배수계획을 적절히 수 립하여야 함 - 운영 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배수·차 집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을 제시 - 유출지하수 재이용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주기적인 측정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	대한 재이용계획 및 배수계획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○동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배출부하량 할당·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바, 향후 환경영향평 가 단계에서 관할지역 시행청(포천시)으로 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고 관 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- 금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,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점에 해당 시행청(포천시) 및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잔 여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 가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시까지 환경영향 평가 등의 협의가 진행될 수 없음	○본 사업으로 인한 발생 및 배출부하 량을 검토하여 포천시, 경기도, 한강 유역환경청 등과 배출부하량 할당협 의를 완료하였으며, 관련 서류를 첨 부하였음	반 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수 환경 분야 (지표)	- 아울러, 동 사업은 수질오염총량 1단계 ('13년~'20년) 기간 외 지역개발사업(준공예정년도: 2024년)에 해당하므로, 「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(환경부훈령 제1440호, 2019.12.27)」제28조제2항에 따라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총량 적정성 검토 후 관련 행정절차(환경영향평가 등)를이행하여야 함	량을 검토하여 포천시, 경기도, 한강 유역환경청 등과 배출부하량 할당협 의를 완료하였으며, 관련 서류를 첨	반 영
토지 환경 분야	 가) 토지이용 ○군내터널의 종점부 인근에 38m의 대규모 절토가 계획되어 있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훼손이 과도하므로 터널을 STA.5+100 지점까지 연장하고, 관리사무소와 회전교 차로의 입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 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	교차로의 입지변경 등을 검토한 결과, 이설도로 신설필요, 군부대 인접으로 재협의 필요,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미충족(종단경사 3%이하), 기존	반 영
	 나) 지형·지질 ○20m이상의 사면고가 발생하는 구간은 절·성토계획 및 종단·평면선형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함 - 절토사면은 비탈면보강, 비탈면처리대책, 비탈면붕괴 감지센서 설치 및 운영 시관리대책 등을 수립·제시 	4개 구간으로 나타났으며, 지형훼손 최소화를 위해 종단·평면선형에 대해 추가 대안을 검토한 결과 금회 계획 노선이 지형훼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- 계획고 축소시 종단 검토결과, 종점부의	반
		○절·성토사면은 비탈면보강(어스앵커 등) 및 처리대책(녹화), 관리대책(비 탈면 계측계획)을 수립·제시하였음	반 영
	○고성토(18m이상) 구간은 교량을 연장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수원천교 연장에 대한 적정성을 검 토한 결과, 금회 연장 L=105m는 지 형변화 최소화 등 환경적 측면 유리 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- 수원천 하폭(7~9m)을 고려하여 필요 한 연장은 L=50m이나, 성토구간 및 경관영향 최소화, 마을간 연결성 확 보 등 L=105m가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	반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생활 환경 분야	 가) 친환경적 자원순환 ○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(재활용 포함)의 처리가능 허용 용량(용량, 실적 등), 「자원순환기본계획」,「폐기물처리기본계획」,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참고하여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(소각, 매립 및 재활용 등) 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·제시하여야 함 	처리가능 허용 용량을 조사하여 본 사업 공사시 예측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 가능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, 적정 처리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, 폐기물 성상별 적정 업체를 통해	반 영
	○지장물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장물 철 거 시 유해물질(석면, 수은, 변압기 내의 PCB, 태양광패널 등) 발생량을 산정하고, 적정 관리계획(폐기물 유형별)을 수립·제시 하여야 함	물질(PCB, 석면, 수은 등)의 발생량 산정 및 영향여부, 적정 관리 및 처리	반 영
	○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과 인근 지역의 임목폐기물 처리업체(벌채, 제재, 재활용, 임목폐기물처리업체 등) 현황을 고려하여 임목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함 - 재활용이 가능한 수종, 재활용 용도, 재활용 대상(뿌리, 가지, 잎, 줄기), 재활용 수량(무게) 등 제시	되는 임목폐기물량을 재활용 대상 (뿌리, 가지, 잎, 줄기)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, 포천시내 폐목재 재활용 업체를 조사하여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 가능량을 비교하여 제시	반 영
	나) 소음·진동 ○공정별(토공사, 교량기초공사, 발파 등)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합성소음도를 기준으로 영향을 예측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(가설방음판넬 등)을 수립·제시하여야함 - 공사 시 합성소음도 예측결과 목표기준을 초과한 지점을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·선정 ○계획노선 운영에 따른 도로소음 영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예측하고,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- 목표 연도까지 연도별/시간대(24시간)별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소음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한 평가(교통 관련 전문가의 이력 사항 포함) - 환경기준을 초과한 정온시설과 계획노선 과의 이격거리를 제시	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를 고려하여 합성소음도 기준으로 영향예측일 실시하였으며, 이에 따른 저감대책 (가설방음판넬)을 수립·제시하였음 - 공사 시 합성소음도 예측결과 목표 기준을 초과한 지점을 사후환경영 향조사지점으로 추가·선정하였음 · 8.직두3리마을①, 9.직두3리마을② ○운영시 도로교통소음영향을 예측하고 기준초과 영향예상지역 6개소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계획(H=2.0~7.0m)을 수립·제시하였음 - 최대소음이 발생되는 연도(2025년) 및 시간대를 적용하여 예측을 실시	반 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생활	다) 위락·경관		
환경 분야	○계획노선 중 고성토 구간 주변에 마을이 위치할 경우 차폐 및 마을측에서 조망되는 경관영향을 현실감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예측하고,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교량을 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- 군내터널의 종점부와 관리사무소 설치 등 으로 인해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지점은 토지이용 항목의 검토의견을 반영(터널 연장)하여 신팔리 마을에서 조망되는 개발 전·후의 경관변화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	천교 시·종점부근으로 인근 마을에서 조망(4번 지점)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변화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였음 - 신팔리 마을(6~7지점)에서 조망되는 개발전·후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여 경관변화예측을 실시하였음 ※군내터널 출구부 연장(안)에 대한	반 영
기타 의견	○사업면적, 시점·종점 주소 및 횡단면도를 제시하여야 함	○사업면적, 시점·종점 주소 및 횡단면 도를 제시하였음	반 영
	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·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		반 영
	○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초안의견과 관계행정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(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)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 - 본 초안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 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 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 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- 각 항목별 예측·평가에 따른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야 함	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	반 영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기타	○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	○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	반 영
의견	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	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	
	적이어야 하며,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작	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	
	성·제시하여야 함	였으며, 최대한 정량화하여 작성하	
		였음	
	- 특히,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	-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	반 영
	첨부·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(예측	첨부·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	
	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	(예측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	
	수치 등)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	사용계획, 수치 등)은 그 적용 및	
	히 제시하여야 함	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	
	-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의 공사·운영 시	-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의 공사·운영	반 영
	평가항목별 조사항목, 조사지역 및 지점,	시 평가항목별 조사항목, 조사지역	
	조사주기, 조사방법 등을 총괄 도표 및	및 지점, 조사주기, 조사방법 등은	
	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함	총괄도표 및 도면으로 제시하였음	
	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	-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	반 영
	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, 그 내용의		_ 0
	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		
	제시. 끝.	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	
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, =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

나. 경기도

구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	□ 검토의견		반 영
	○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터널폐수	ㅇ터널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은	
	처리기준 강화(가지역→청정지역), 수질자	보다 강화된 pH 8.5이하, BOD 10mg	
	동측정기기(TMS) 설치를 반영하였음, 평가	/L이하, SS 20mg/L이하, TOC 15mg/L	
	서상의 계획에 따라 수환경 보전을 위한	이하, TN 20mg/L이하, TP 1mg/L이하	
	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, 예	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, 본 평가	
	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하류수계에 영	서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	
	향을 미칠 시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저감	행하여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	
	대책을 수립·이행하시기 바람	최소화 할 계획임	
	○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	○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른	반 영
	견 반영여부를 각각 제시해야 함	반영여부를 제시하였음	
	○현지조사 시, 법정보호종으로 삵, 황조롱이,	○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저	반 영
	독수리가 발견되었으므로 모니터링 및 저	감방안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	
	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, 보호	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(전문가조사)	
	종 발견 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	을 수립하였으며, 보호종에 영향을	
	의 자문을 받아 개체군이 소멸되지 않도록	미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	
	적정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, 경기도보	문가 자문을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	
	호종에 대한 조사 필요	하겠음	
		※경기도 보호종은 현지조사시 발견	
경		되지 않았으며, 문헌조사시 도롱뇽,	
7]		청호반새, 호반새 등 3종이 확인됨	<u>.</u>
도	○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보호시설	○본 사업시행시 주변 보호시설물 및	추 후
	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	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 등으로	반 영
	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, 합리적인 협의	인한 민원발생 시, 충분한 협의 등	
	등을 거쳐 민원 해결 방안 강구	을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음	ਸੀ ਨੀ
	○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 제 및 스청고제 제하으레프의 이무지으오	○「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건설공사의 - 스청고계 이무기요라 드센 괴청	반 영
	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용 도 및 사용량인 '골재 소요량의 40%'를 준	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」에 의거 골재 소요량의	
	도 및 사용당인 글새 조효당의 40% 글 만 수하여야 함		
	구아석아 힘	40%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할 계획임	
	○동물 이동로 확보 및 로드킬 방지 등 생태	○동물 이동로 확보 및 로드킬 방지	 반 영
	계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유도 울타리 등	등 생태계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	2 0
	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「생태통로 설치 및	유도울타리, 생태측구 등을 계획하	
	관리지침」을 참조하여 조성 목적에 부합	였으며, 「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	
	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	지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	
	여야 함	토록 하겠음	
	○운영 시 소음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방음벽	○투명형 방음벽 설치 시「야생조류와	반 영
	설치의 경우 불투명벽, 조류 충돌테이프 부	유리창 충돌, 2017, 국립생태원」를	- 0
	착 등 조류 충돌 방지를 고려하여 설치하	참조하여 불투명 및 반투명 유리 및	
	시기 바람	창문 필름 활용, 조류 충돌테이프	
		부착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하	
		였음	

다. 포천시

구 분	검 토 의 견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포천시 (친환경 정책과)	○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-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전 친환경정책 과에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작성·제출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함 ○자연환경보전법(생태계보전협력금) -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, 전략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, 전략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, 전략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면적이 3만㎡ 이상일경우에는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승인기관(부서)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 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함.(문의 031-8008-3514)	○「자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 태계 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사업승 인 후 20일 이내 경기도 환경정책과	변 후 영 후 반